

고성군울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7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3. 3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0. 3. 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0. 3. 29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개정취지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비하여 유입량이 적어 폐수처리단가의 상승 및 폐수의 장기체류로 인한 수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함으로써 기존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하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자(장)의 범위에 유성산업(주)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2호)

나. 고성울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 범위에 고성읍 울대리 농공단지 외 유성산업(주)를 추가함.(안 제5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1991. 3. 23 조례 제1262호로 제정 그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왔으며, 울대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용량 1일 1,000M/T에 비하여 유입량이 적어 폐수처리 단가의 상승으로 입주업체의 부담이 과중할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유성산업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오·폐수처리장의 오·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함으로써 기존 농공단지내의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 유성산업(주)에서도 단독 처리장 운영비를 경감하는 효과가 예상됨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이라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현 울대농공단지의 하루에 오·폐수 처리량은 얼마나 되고 있으며, 유성산업의 오·폐수 배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 답 : 전체 처리용량은 1일 1,000M/T이며, 연도별로는 97년도 280M/T, 98년도 260M/T, 99년도 318M/T, 금년 2월까지 180M/T밖에 안되며, 유성산업에서는 1일 50M/T정도 되므로 처리용량 기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유성산업 자체운영비가 한달에 3~4백만원이 소요되고 농공단지에서도 운영비가 한달에 1,100만원정도 소요되므로 유성산업의 오·폐수가 유입되면 유성산업은 단독 운영비절감의 이익을 보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도 처리비용의 부담이 경감되는 서로가 좋은 이점이 있음.
- 문 : 의안 3항의 참고사항에 울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군수가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임의로 승인한 것인지
- 답 : 그 사항은 울대농공단지와 유성산업이 협의하여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군에 요구하였기에 검토하여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변경승인을 신청 하였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0. 3.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